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황산화물(S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배연탈황 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열병합발전	25(6) 이하	20(6)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25(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25(4) 이하	25(4) 이하	
(나) 열병합발전	50(4) 이하	3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20(15)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열병합발전			
①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50(6) 이하	
㉡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②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다) 발전용내연기관	30(15) 이하	10(15)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20(6) 이하	2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다) 소각시설	10(12) 이하	5(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연료 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인 시설	5(12) 이하	5(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00(13) 이하	50(13) 이하	
(2) 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50 이하	35 이하	
(2) 그 밖의 시설	40 이하	1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50(4) 이하	30(4) 이하	
(2)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3)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50 이하	35 이하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시설	10 이하	1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화수시설		
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㉕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2) 그 밖의 시설	50 이하	50 이하

2. 질소산화물(NO₂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저녹스 (NOx) 버너,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 선택적 비촉매 환원장치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15(6) 이하	10(6) 이하	
(나) 열병합발전시설(발전용 내연기관 포함)	50(6) 이하	1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10(4) 이하	
(나)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10(15)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50(4) 이하	1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0(4) 이하	5(4) 이하	
②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50(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70(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 일러 이외의 시설	40(4) 이하	20(4) 이하	
(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 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60(4) 이하	40(4) 이하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라)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90(6)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 0.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5(12) 이하	10(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0(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13) 이하	135(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3)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3) 이하	80(13) 이하
(다) 2015년 1월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4) 그 밖의 시설	70 이하	60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2) 그 밖의 시설	100 이하	60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라)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 순산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2) 그 밖의 시설	200 이하	80 이하
마)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바)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①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0(4) 이하	60(4) 이하
② 그 밖의 시설	40(4) 이하	30(4) 이하
사)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1) 배소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소결로	45 이하	30 이하
(2)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60 이하	4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종류
	기준농도(ppm)		
	초기연도	최종연도	
1) 공통시설			여과집진 시설, 전기집진 시설 등
가) 발전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5(6) 이하	2(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15)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7(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2(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7(4)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6) 이하	9(6)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6) 이하	9(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①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5(4) 이하	
②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14(4) 이하	
다) 소각시설			
(1)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12) 이하	
(2) 소각용량이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	20(12) 이하	4(12) 이하	

당 0.2톤)미만인 시설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4(12) 이하
2) 공정연소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 이하	10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 이하	20 이하
3) 비연소시설		
가) 전기아크로, 전기로, 전기유도로	5 이하	5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 이하	10 이하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 이하	20 이하

비고

1.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지시설로 본다.
2.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의 제2호가목 비고 4 및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비고 4의 타 및 비고 5의 하, 거는 제외)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보다 작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 가. 초기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 나. 최종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3. 기준농도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한다.
4. 각 호의 표 2)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1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text{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times \text{할당계수단위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있는 배출시설

1) 초기 할당계수(초기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초기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2) 최종 할당계수(최종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종 할당계수} =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times (\text{별표 1에 따른 최종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text{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3)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삭감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한다.

비고

1.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의해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목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4. 3호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나. 가목 이외의 배출시설

$$\text{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text{초기 할당 계수} = \text{최종 할당계수}$$

3. 할당계수단위량의 적용 방법

할당계수단위량 산정 시에는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한다.

비고

1. 시설 개선, 연료 변경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가동중지기간을 제외하고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동중지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중지 기간을 1개월로 산정한다.

$$\text{할당계수단위량} = \frac{\sum \text{최근 5년간 연료·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5 - (\text{가동중지기간 개월수}/12)}$$

2. 시설 증설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연료·원료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연료·원료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 중 연료·원료사용량의 증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증가는 제외한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 예상량을 고려한 할당계수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5.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6.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 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란 설비의 종류,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을 말한다.
2. "단위 배출량"이란 해당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연도의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3. "할당계수단위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
4.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전년도에 시설미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동된 최근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때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6. 배출허용총량의 산정·할당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5조제1항 관련)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방지시설 적용 효율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중 오염물질 발생량란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text{방지시설 적용 효율(\%)} = (\text{발생량} - \text{배출량}) \div \text{발생량} \times 100$$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0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零)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해당 연도의 가동일수/365를 곱한 값으로 하고, 폐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영(零)으로 한다.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도가** 할당받은 **사업장부문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검사항목 적용일자 제작일자	매 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월 1일 이후
1992년 12월 31일 이전	40% 이하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5% 이하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비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나목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를 적용하여 검사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한 초안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차 종	제작일자	매 연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0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제31조 관련)

1. 가정용 보일러

가정용 보일러란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2. 배출가스의 항목별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질소산화물(NOx)	20(0) ppm 이하	40(4) ppm 이하	60(4)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100(0) ppm 이하	120(4) ppm 이하	120(4) ppm 이하

3. 열효율 인증기준

항 목	기체연료 (1등급)	기체연료 (2등급)	액체연료
열효율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비고

1. 기체연료 1등급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2. 기체연료 2등급 및 액체연료 가정용 보일러는 액화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또는 환경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등급 기체연료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38조 관련)

업무 내용	보고 횟수	보고 기일	보고자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의 조사결과	수 시	조사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접수 현황	연 1회	해당 연도 9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에 대한 업무 처리현황	수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4.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현황	수 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제한한 사항	수 시	허가제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현황	연 1회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8.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증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현황	수 시	조정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0.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1. 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2.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 현황	수 시	취소 및 폐쇄 후 7일 이내	시·도지사
13.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 체결 현황	수 시	체결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4.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